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박정현 · 민병덕 · 박해철  
전현희 · 김주영 · 전용기  
김성희 · 이강일 · 서미화  
박홍배 · 최혁진 · 이광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 그 밖에 그”를 “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4조”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p>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 구 위원 · 행정보조요원과 <u>「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 원의 구분)제1항 · 제2항에 따 른 교원은 제외한다.</u></p>	<p>----- ----- <u>「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교원, 「초 · 중등교 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4 조---.</u></p>
<p><u>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 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 외한 사립학교의 교원</u></p>	<p><u>&lt;삭 제&gt;</u></p>
<p><u>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원의 신분을 가진 자</u></p>	<p><u>&lt;삭 제&gt;</u></p>
<p>4. (생략) ② (생략)</p>	<p>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